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고도화 연구
(제안요청서)

2020. 9.

환 경 부
녹색산업혁신과

I. 제안의 일반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 개요

- 용역명 :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고도화 연구
- 용역내용 : "II. 제안 요청내역" 참조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 기초가격 : 130백만원(부가세 포함)
-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2. 입찰 관련사항

가.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나.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다. 계약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낙찰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71호, '19.12.18)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3.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4. 제안서의 효력

-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이전까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다. 추가자료 요청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가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 라.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5. 유의사항

- 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세부기준,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제안서 작성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나. 본 용역에 입찰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 마감일내에 소정의 적격심사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함
-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 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 사.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을 무효로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 아. 과업 완료 후 사업비 집행내역을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적정 집행여부를 검토 받고 집행잔액, 부적정 사용액 등을 정산·반납하여야 하며, 별도 계좌로 용역비용 관리하여야 함
- 자.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은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044-201-6707), 운영지원과(044-201-6262)로 문의하시기 바람

II. 제안요청내역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기후변화 리스크의 증가에 따라 세계 지속가능 금융 시장 성장 중
 - 전세계 지속가능 금융시장 총액은 14년 약 18조달러에서 18년 약 30조 달러로 증가
 - 녹색금융 시장의 성장에 따른 그린워싱(Green-washing)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녹색 분류체계(Taxonomy)마련 진행 중
 - 녹색 분류체계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선 기술적 기준 고도화 필요
 - 금융권의 수요가 큰 분야(에너지, 수송, 건설)를 우선으로 기술적 기준 고도화
- ※ 기후채권기구에 따를 시 녹색채권의 약 80%가 에너지, 수송, 건설 분야에 집중

2. 과업의 개요

가. 과업명 :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고도화 연구

나.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다. 소요예산 : 130백만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1500-1531-307-260-01(중소환경산업 사업화 지원사업)

3. 과업의 내용

가. 해외 녹색 분류체계 구축 및 적용 사례 조사

- EU 지속가능금융 분류체계, 중국 녹색 카탈로그 등 녹색 분류체계 구축에 관한 해외 사례 조사
- Invest EU, EU 에코라벨 등 녹색 분류체계 활용 사례 분석

나. 녹색 분류체계 고도화

- 에너지(전기, 가스, 증기 및 에어컨 공급), 수송(운송과 저장), 건설(건설 및 부동산 활동)의 녹색 분류체계 고도화
 - 각 경제활동별 적용될 수 있는 국내 법령 및 기준 조사
 - 경제활동별 적용될 수 있는 계량적 기준(탄소배출량 등) 도출
 - ※ 각 경제활동별 계량적 기준의 산정 근거를 적시하며 계량적 기준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유 명시 필요
- 분류체계에서 적용될 수 있는 DNSH(Do No Significant Harm)원칙 고도화
 - 각 경제활동별 DNSH 여부 판단에 활용될 수 있는 법조항 도출

다. 녹색 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 시행

- 민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녹색 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 실시
- 그린뉴딜 투자 대상 사업의 녹색 여부 판단 시범사업 실시

라. 금융기관이 활용가능한 녹색금융 가이드라인 개발

- 분류체계를 기초로 금융 상품(펀드, 용자 등)의 녹색 여부 판단에 활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개발
 - 각 금융상품별 사업자 요청 자료 포함
- 분류체계를 토대로 기업의 녹색 여부 판단에 활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개발

마. 녹색 분류체계 고도화를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 녹색 분류체계 고도화 관련 산업계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 전문가 간담회 및 서면 검토 운영(각 1회 이상)

4. 행정사항

가.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의 목적 및 필요성
 - 과업의 목표 및 범위
 - 과업 세부내용 및 세부수행 계획표
 - 조사·연구 방법(조사대상, 연구방법 등) 및 조사내용
 - 연구원 편성표 및 연구경력과 관련 연구실적
 - 연구용역 진행과정의 자문단 구성표(분야별 실무진 참여)
 - 연구 추진계획(일정)표
 - 사업비 소요명세서(산출내역)
- 공동연구기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을 구성할 경우 각 기관별로 과제수행세부계획서를 제출

나. 과업수행

- 본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 등 중요한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 요청시 수시로 자료 제출·보고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회의자료를 제출·보고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로부터 3일 이내에 회의 결과를 제출·보고하여야 함
 - ※ 발주기관의 요청시 수시로 자료제출·보고 필요
- 용역계약자는 본 용역기간 중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관계전문가의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자문내용을 과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회의에 필요한 수당 등은 용역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함

-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중간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최종보고회 : 계약종료일로부터 15일 이전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사업 수행기간 중 발주기간의 요청에 따라 주기적으로(매월 등) 수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함
- 용역계약자는 회의 개최 공문 및 회의에 필요한 보고서를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 용역계약자는 최종보고서 최종본은 초안을 작성하여 용역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최종보고서 최종완성본을 계약종료시까지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본 과업 회의결과는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회의개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다. 과업변경 및 조정

- 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 수행자가 제출한 과업추진 공정이나 과업 수행내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계획서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에 대해 감독관의 변경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반영하여야 함
- 과업수행에 있어서 용어 해석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감독관의 해석에 따름

라. 하자 책임관계

-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용역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성과물 내용에 대하여 자문 및 지속적 정보제공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함
- 본 용역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성과품의 미비사항이 발견된 경우, 최종 성과품에 그 내용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여야 함

마. 기타사항

- 과업수행자는 과업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과업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며 보안규정을 준수하고, 과업수행 계획서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과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해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해야함
-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보고서 등을 작성·제작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 성과물의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은 과업수행자가 부담·시행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사항과 정리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시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에 계약서상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계약 쌍방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감독관의 해석이 우선함
- 과업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 및 부대업무에 대한 감독관의 요청시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등 각종 산출물은 과업 완료 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과업수행계획내용 변경시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과 관련된 문제발생시 즉각 발주기관에 통보한 후 상호협의를 거쳐 해결하도록 함
- 보고서 작성 시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사항을 인쇄 전에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해야함
- 기타 보안사항 외부누설 금지 등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가 상기 보안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대외비 및 비밀로 분류되는 보고서 인쇄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인쇄업체에서 인쇄하되 발주기관이 인쇄과정에 입회하여 원지, 폐지 등을 회수 파기하여야 함

5. 성과품 제출

- 최종보고서 10부 및 보고서가 수록된 CD 1매

Ⅲ. 제안서 작성요령 등

1. 과업제안서 작성요령

- 과업지시서와 용역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숙지하여 다음의 사항이 충실히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할 것(한글로 작성, A4 50쪽 내외)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연구방향, 방법, 수행체계
 -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참여연구원 및 이력사항(특히 책임연구원 이력사항은 경력과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제시)
 - 연구 사업 추진 일정
 - 연구비 소요 명세표(비목별 연구비 세부 산정 내역 제시)
- 연구실적의 경우 연구제목 뿐만 아니라, 주요내용, 연구기간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 영문제목과 함께 반드시 한글제목을 병기할 것
 - 가급적 당해 사업과 관련(유사)한 연구실적을 위주로 작성할 것
- 용역업체의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연구비 소요명세표는 가급적 상세하게 작성할 것

2. 과업제안서 평가

가.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총 점		100
기술 능력	1. 사업수행계획	45
	① 사업내용의 이해도 - 과업의 이해정도 - 과업의 요구사항 반영여부	15
	②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 과업추진 단계설정의 적절성 -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15
	③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과업수행의 총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의 실현가능성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15
	2. 참여 전문인력	25
	① 참여인력 구성 및 경력 - 분야별 인력 구성 및 전문성 - 인력구성원의 연구실적	10
	②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 책임연구자로서의 사업 수행능력 - 해당분야 연구실적	15
	3. 관련(유사)분야 사업수행실적	10
입찰 가격	평점산식 : 아래	20

주)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
 -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2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
 -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 입찰가격평가지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나. 협상 및 사업자 선정 방법

- 기술평가점수(80점 만점)와 가격평가점수(20점 만점)를 합산하여 최종점수를 산출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
 -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1호, '19.12.18)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3. 입찰 관련서식 : 붙임

(붙임 1)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u>주요연혁</u>			

(붙임 2)

본 사업관련 주요연구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관련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본 란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하며, 첨부하지 않은 사업은 인정치 않음(증빙서류 : 실적증명원, 계약서 사본)

(붙임 3)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격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붙임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와 ○○○사가 재정·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용역사업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업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주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3. ○○○회사(대표자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거래계좌) 기성대가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선금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 : %
- 2. ○○○ : %
- 3.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수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분쟁의 해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과업수행 중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분쟁의 발생소지가 있을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 되지 않을 경우 분쟁의 모든 책임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진다.

제14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의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 (기타) 본 협정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제안서에 포함된 사항은 본 협정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19년 월 일

○○○(인)

○○○(인)

(붙임 5)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년 월 일
입찰건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부에서 정한 각종 조건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붙임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환경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협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환경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환경부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환경부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환경부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